

제17회 대한민국창업대상
시상 계획(안)

2020. 3

서울경제

I. 시상 개요

1. 명 칭 : 제17회 대한민국창업대상

2. 목 적

-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 창업시장에서 새로운 모델 제시
- 기업인 활동의 정당한 평가를 도모하고, 사기를 고취하는 계기 마련
- 외식, 뷰티, 바이오, IT, 서비스, 문화, 금융, 제조, 스타트업 등 창업 전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앞장선 유능한 창업 경영인을 발굴
- 창업 문화 창달과 국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
3. 주최 및 주관 : 서울경제신문

후원 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
대한상공회의소

4. 시상 일시 및 장소

- 일시 : 2020년 6월 16일(화) / 14:00
- 장소 :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(4층)
- 참석 : 시상자, 수상자, 심사위원장, 수상업체 임직원 등

5. 문의 및 신청 접수처

- 대한민국창업대상 사무국
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층
- TEL: 서울경제 편집국 생활산업부 02)724-8636~7
대한민국창업대상 사무국 02)724-8781
www.sedaily.com / e-mail: ykj@sedaily.com

6. 시상 진행(안)

- ① VIP 환담 및 시상자, 수상자 입장
- ② 국민의례
- ③ 인사말씀 및 축사
- ④ 심사평
- ⑤ 시상
- ⑥ 기념촬영
- ⑦ 폐회

7. 시상의 종류 및 내용

| 구분(상훈) | | 포상규모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정부포상 | 국무총리 표창 | 2점 (단체/CEO) |
| |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| 5점 |
| |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| 5점 |
| 기관장상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| 5점 |
| |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| 5점 |
| | 서울경제신문 사장상 | 5점 |

해당 부문 및 내용(안)

※ 상기 시상 내용은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□ 심사 및 평가 기준

1. 심사 기준

○ 창업경영인 및 회사 평가

-경영자 자질, 경영시스템, 경영전략 및 사업비전, 브랜드 경영성과, 가맹점 지원 등

2. 평가 기준

- 공익활동, 사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,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수상자격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힘들므로, 1차적인 평가기준을 ‘경영성과’ 로 선정
- 세부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

□ 심사 및 평가 기준

1. 세부 평가 항목

| 범주(배점) | 평가항목(배점) | 범주 | 평가항목(배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경영자의 자질 및 리더십 (200) | (1)경영자의 자질 (100) (2)경영자의 경영철학 (100) | 4. 브랜드 경영성과 (300) | (1)브랜드 경영체계 (100) (2)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(100) (3)브랜드 시장지향성 (100) |
| 2. 경영시스템 (500) | (1)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(100) (2)연구개발 (100) (3)마케팅 (100) (4)정보화 (100) (5)물류시스템 (100) | 5.기업문화 (300) | (1)기업윤리 (100) (2)복지 시스템 (100) (3)종업원 만족도 (50) (4)노사간 커뮤니케이션 (50) |
| | | 6.사회적 기여 (300) | (1)고용 기여도 (100) (2)창업 문화 진흥 기여 (100) (3)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(100) |
| 3. 경영전략 및 사업비전 (400) | (1) 경영전략 (100) (2) 상품 및 서비스 (100) (3) 경영실적 (100) (4) 사업전망 (100) | 계/2000점 | A,B,C,D,E,F 등 6단계로 평가 |

II. 응모 및 진행 일정

1. 응모 자격

- 창업경영인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영인
- 정부포상 결격대상이 아닌 자
- 국무총리 표창은 수공(재직)기간 5년 이상 단체이며 장관 표창은 3년이상, 그 외 표창은 2년 이상(단, 신생브랜드 부문은 2년 미만) 수공기간은 해당 브랜드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부터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.

2. 응모 기한 : 2020년 3월30일(월)~4월17일(금)까지

3. 응모 방법

- 소정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접수 기한 내에 대한민국창업대상 담당자에게 접수(이메일접수)
담당자: ykj@sedaily.com / 02-724-8781
-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| 수량 | 서식 | 비고 |
|--|----|-----|----------|
| 1) 응모 신청서 | 1부 | 첨부1 | |
| 2) 공적조서 | 1부 | 첨부2 | |
| 3) 공적요약서 | 1부 | 첨부3 | |
| 4) 공적내용 증빙자료 (작성분량, 형식 자유, 내용은 평가항목 참고) | 1부 | - | 해당업체에 한함 |
| 5) 최근 3개년 재무제표 | 1부 | - | 결산월 기준 |
| 6) 사업자등록증 사본 | 1부 | - | |
| 7) 추천서(양식, 형식 제한 없음) | 1부 | | 해당업체에 한함 |
| 8)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| 1부 | - | |

※ 응모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양식은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
4. 심사절차

- 심사위원(장) 선정 ⇨ 응모 신청서 접수 ⇨ 서류심사 ⇨ 현장 실사 심사 ⇨ 심사위원회 개최 ⇨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⇨ 최종 확정

- **서류 심사**

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시상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평가모델에 의해 정보공개서와 공적요약서를 토대로 평가

- **발표 심사**

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응모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성 및 차별성 등을 평가

- **현장 실사 심사**

정부포상 수상후보 기업에 대해 현지 방문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관계자 인터뷰

※ 현장 실사 시 심사위원은 3인1조(본지 기자 포함)로 구성함을 원칙

- **전체심사위원회 개최**

전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포상대상자 확정

5. 진행 일정

| 구 분 | 일 정 | 내 용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기본계획 확정 | ~3.13(금) | 서울경제 대한민국창업대상 시행위원회 |
| ② 정부 협의 | ~3.27(금) | 후원 기관 |
| ③ 신청 안내 사고 게재 | 3.30(월) | 서울경제 지면 |
| ④ 응모신청 및 서류접수 | 3.30(월)~4.17(금) | 서울경제 대한민국창업대상 시행위원회 |
| ⑤ 심사 | 4.24(금) | 심사위원(심사인원 6명) |
| ⑥ 정부 포상 심의 | ~6.5(금) | 정부 후원부처 및 기관 |
| ⑦ 시상식 | 6.16(화) |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(4층) |

※ 상기 일정은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의,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[참고]

< 정부포상에 대한 참고사항 >

1. 정부 포상의 기본방향

□ 국무총리 표창 추천 기준

- (수공기간) 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자(단체 포함)에게 수여

□ 재포상 금지기간

-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단체는 시상년도 제외한 이후 동일공적분야에서 2년간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(단, 주최·후원기관장상 가능)
- 장관표창 이하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시상년도 제외한 이후 2년간 다시 동일 훈격으로 받을 수 없음 (단, 훈격 격상은 가능)

※ 일반적 기준으로 본 포상은 최근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

※ 정부포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공적심사위원회 및 안전행정부에서 별도의 2차 심사절차를 통해 확정하여 포상의 신뢰도 향상함

2. 포상 추천제한

□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
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 -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-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
 - 임원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「사업상 등기부등본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」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단,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-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단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

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

□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
-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□ 수상거부시 향후 3년간 정부포상 추천 제한

-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정부포상 수상거부시에는 향후 3년간 정부포상 추천을 제한